
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9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김예지 · 백혜련
용혜인 · 전종덕 · 최혁진
한정애 · 남인순 · 김정호
서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간호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인 ‘태움’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 이러한 태움은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,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,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).
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

제37조제1항제6호 중 “일·가정 양립”을 “그 대응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간호사등의 일·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, 이직 방지,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제31조(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7.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</u>
<u>7.·8.</u> (생략)	<u>8.·9.</u> (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7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	제37조(실태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그 결과를 공표하고, 이를 종합 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 략) 6.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<u>일·가정 양립</u>에 관한 사 항 <u><신 설></u> 7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	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<u>그 대응</u>----- 7. <u>간호사등의 일·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</u> 8. (현행 제7호와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-